

◆ 과학기술처

원자력법시행령 중 개정령

1. 개정이유

국제원자력안전협약의 발효(1996. 10. 24)와 원자력관계시설의 증가 등 국내·외의 원자력관리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이 개정(법률 제5233호, 1996. 12. 30)됨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시설의 설치시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(제19조의3 및 제20조).
- 나.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심사에 관한 기능을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함(제22조 및 제33조).
- 다. 방사선에 의한 위험도가 매우 적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제 완화를 위하여 시설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실시의무제도를 폐지함(제199조 및 제299조).
- 라.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을 제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수거·처리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제공업자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(제294조의2).
- 마.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32조의3 내지 제332조의5).
- 바.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이 안전관리에 관

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, 방사성폐기물의 저장ZERO처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(별표 3 제5호 및 제6호).

■ 「과학기술 30년사」를 발간

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정책의 변천과정을 종합 정리한「과학기술 30년사」를 발간했다. 6백60쪽에 이르는 30년사는 지난해부터 편찬위원회(위원장 이병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)가 구성돼 산업계 학계, 연구계, 인사 60명이 집필에 참여했다. 30년사는 △과학기술 정책의 기초와 내용 △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연구 개발 성과 △국내 과학기술 수준과 국제비교 등 3부로 편집됐으며 서울 교보문고에서 판매될 예정이다.

■ 축하합니다

[인사] 과학기술처

〈과장 전보〉

- 연구관리과장 김대석
- 행정관리담당관 윤대수

〈서기관 승진〉

- 항공우주연구조정관실 김주한
- 원자력개발과 배재용
- 원자력개발과장 장기열
- 국무총리실 파견 김승봉
- 해외 연수 파견 유중익
-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파견 윤세준

[합격] 과학기술처 방사선안전과 백민사무관 제50회 기술사(방사선 관리) 합격

◆ 원자력환경기술원

1997년도 기술원 개원 6개월 보고서 한국전력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은 개원 이후 기술원의 비전과 발전구상을 담은「1997년도 기술원 개원 6개월 보고서」를 발간했다.